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5. 4 선고 2023가단106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운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충남 부여군 C 대 502㎡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2008. 10. 19.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소외 D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소외 D와 형제관계인데 피고가 모친인 소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10. 19. 사망한 후 2018. 2. 22. 망인의 소유였던 충남 부여군 C 대 5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은 무자력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무자력인 채무자 D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인지 여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와 소외 D의 아버지인 F는 1992. 11. 8.경, 어머니인 망인은 2008. 10. 19.에 각 사망하였는데 망인과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 소외 D를 포함한 망인과 망 F의 공동상속인 7명은 2018. 2. 16. 망 F의 상속재산 중 충남 부여군 G 답 1,187㎡는 D의 소유로, 충남 부여군 H 임야 14,975㎡,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35.04㎡는 피고의 소유로 하고, 망인의 상속재산 중 충남 부여군 H 전 916㎡ 및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되,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5명에게는 피고가 9,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 ③ 이러한 협의에 따라 피고는 D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5인에게 각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결과 I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I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